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28

발의연월일: 2022. 8. 19.

발 의 자:이종성・박대수・박덕흠

박성민 · 서정숙 · 성일종

정운천 · 조명희 · 최승재

최재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 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특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에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시·도에 1개소 이상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
| 설치 등) ① (생 략) |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구 | ② |
| 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 | |
| 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 |
|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 | |
| 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u><후</u> | |
| <u>단 신설></u>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시ㆍ |
| | 도에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 |
| | 하여야 한다.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